

EC의 共同農業政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며 릿 말

本研究院은 農政關係 研究業務를 돋고, 또한 政策實務에도 參考가 될 國內外 資料들을 수집·편찬하여 「研究資料시리즈」를 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권으로 유럽共同体의 共同農業政策을 간결·명료하게 풀이한 “EC의 共同農業政策”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C Commission, December 1977 Revised) 을 우리말로 옮겨 엮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EC諸國은 高度產業社會의 침단에 있으면서도 同時에 農業을 保護維持하기 위하여 制限된 輸入開放政策과 農業構造改善施策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扶養人口가 많고 資源限界에 임해 있는 EC의 農業이 90%의 食糧自給率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注目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50年代에 EC는 “國際關係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인 國際農產物交易問題, 특히 美國의 剩餘農產物의 攻勢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基盤이 취약한 유럽農業을 守護해왔습니다. 특히 農產物價格支持制度의 다양하고 獨창적인 開發, 農產物市場의 國際化에 대처하여 마련한 價格制度, 稅制, 流通分野의 여러가지 制度的裝置는 転換期에 농인 韓國農政에도 많은 參考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빈 면

目 次

I. 農業政策의 必要性.....	3
II. 實踐으로 본 政策.....	8
III. 變化하는 農業.....	14
IV. 政策의 執行.....	20
V. 農產品市場의 組織.....	28
VI. EC共同體와 世界經濟	48
<附錄>	
共同農業政策에서 使用하는 詞語의 語義解說.....	54

빈 면

I. 農業政策의 必要性

유럽共同体(E C)가誕生한 後 20年 동안 共同農業政策은 모든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한 要素였다. 農業에 对한 政策이 서지 않았다면共同体의 經濟的 基盤을 마련해 주고 있는 関稅同盟의 創設이 不可能했을 것이다. 共同農業政策은 9個 加入国의 国家別 政策에 대신한共同体의 单一政策을樹立함으로써 會員国間의 심각한 利益衝突을 調整시켰으며, E C로 하여금 國際關係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問題中의 하나인 農產物 貿易問題를 國際的인 次元에서 다룰 수 있게 해 주었다.

各国 人口数와 人口密度

	面積 (㎢)	人口 (百万)	㎢당人口密度
西 独	248,600	61.8	249
프 랑 스	547,000	52.7	96
이 텔 리	301,300	55.8	185
네 브 븐 드	41,200	13.7	332
벨 지 움	30,500	9.8	321
룩 셈 부 르 그	2,600	0.36	139
英 国	244,000	56.0	230
아 일 랜 드	70,300	3.1	44
덴 마 크	43,100	5.0	117
9個國合計	1,528,600	258.5	169
미 국	9,363,100	213.6	23
소 련	22,402,000	254.4	11
日 本	370,000	111.5	301

安定的 供給

EC는 세계의 주요 食糧生產地域 中의 하나다. 이 地域의 農夫와 耕作者들은 EC人口 2億 5千 9百萬名이 必要로 하는 食糧의 90%를 生產할 수 있다. 食糧不足事態가 되풀이 될 危險이 있는 予測 不可能한 오늘날의 世界에서 이처럼 높은 水準의 生產은 참으로 貴重한 保險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世界的인 食糧供給의 긴박성은 70年代初에서야 明白해졌다. 그 해의 치솟던 世界 食糧價格은 76年에 들어서서 緩和되었으나 世界人口는 앞으로 20년안에 倍增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들의 需要를 充當할 만큼 充分한 食糧을 供給해야 할 世界의 生產能力은 에너지의 不足, 異狀氣象, 심지어 世界 어느 한 구석의 政治的 事態등에 의해서 까지 制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長期的인 食糧供給의 不確実性 때문에 거의 모든 政府는 — 그리고 全體로서 EEC는 — 食糧의 國內生産을 適正水準으로 維持시키려는 農業政策을 樹立하게끔 되었다.

EC는 世界 食糧市場의 需給 均衡이 심각하게 逆轉되었던 1973 ~ 76年 사이에 自体 食糧生產能力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期間中 EC加入国의 食品價格은 國際價格보다 출곧 낮았고, EC는 가장 심각한 打擊을 받은 開發途上國들에게 剩餘 穀物을 提供, 通常의 食糧援助 公約을 超過履行 했었다.

安定된 農業

EC의 모든 加入国에 있어서 農業의 福利는 農村地域의 福利, 地方 都市와 마을의 生活, 農業地帶의 狀態에 影響을 미친다。 農

業이 沈滯하면 農業에 依存하는 地域도 広範한 社会的、經濟的，政治的 影響을 받아 沈滯하게 된다。政府가 特別政策에 의해서 農業의 適正水準의 安定을 維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食糧의 國內供給을 維持하고，相當한 程度로 農業部門의 繁榮을 保障한다는 基本的인 目的들은 生產者에게 投資가 不可能할 程度로 價格이 低落하지 않을 것이라 確約과 信賴感을 줌으로써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確約이 없다면 그들의 動向은 전혀 豫測不可能하여 한 해는 豊作과 價格暴騰이，다른 한 해는 凶作과 價格暴落이 되풀이 되기 쉬운 것이다。

經濟에서 農業이 지니는 重要性

EC를 構成하고 있는 加盟国들이 처음 經濟를 統合하는데 着手했을 때 그들은 農業을 여기에 包含시켰다。農業이 그만큼 重要했기 때문이다。ロ마條約이 調印된지 20年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食糧의 生產과 交易은 EC 經濟에 있어서 重要한 要素로 되어있다。프랑스와 베델란드처럼 一部 加入国에 있어서는 農業이 오랫동안 国民生產과 對外貿易에 대해 重大한 寄与를 해 왔다。農產物은 아직까지도 프랑스 輸出의 5분지 1, 베델란드 輸出의 4분지 1을 占하고 있다。

EC의 새 加入国인 덴마크，아일랜드，英國 3個國 中에서도 덴마크 輸出의 3분지 1，아일랜드 輸出의 약 절반은 農產品이다。食糧輸入이 많은 나라는 西獨，이탈리，英國으로 總輸入의 20~25%를 食品이 차지한다。

經濟全体에서 農業이 차지하는 比重

(1974 年 現在 價格으로 GDP에 대한 農業의 %)

西 独	2.8%	魯 西 부 르 크	3.3%
프 랑 스	5.7%	英 国	2.2%
이 텔 리	8.2%	아 일 랜 드	19.0%
네 븐 란 드	5.4%	덴 마 크	9.0%
벨 지 움	2.7%		

EC의 創設무렵에는 人口의 相當 部分이 土地에서 生計를 維持했다. 1960 年, 勤勞者 5人中 1人은 農民이거나 農業勞動者였다 現在의 숫자는 12人에 1人 끌이다. 그러나 一部 国家나 地方에 있어서 農業은 아직도 가장 큰 雇傭ability을 갖고 있다.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農業이 勤勞人口의 25%를 먹여 살리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에는 포도주 生產者數가 1百萬名에 達한다. 프랑스에서만도 酪農部門은 거의 2百萬名을 雇傭하고 있고, 英國에서도相當히 広範한 地域들이 쇠고기와 면양생산에 經濟를 依存하고 있다.

各国 政府들은 새로운 政策이 討議될 때마다 이런 要素들을 意識하고 있다.

農業部門從事人口의 % (1975)

西 独	7.3	魯 西 부 르 크	6.2
프 랑 스	11.3	英 国	2.7
이 텔 리	15.8	아 일 랜 드	24.3
네 븐 란 드	6.6	덴 마 크	9.8
벨 지 움	3.6		

共同政策으로 統合된 9個國 政策

EC가創設되기 前 9個國은 国民經濟에서 갖는 農業의 重要性 때문에 때로 다른 나라로 부터의 農產品 輸入에 差別措置를 하는 政策을樹立하기도 했다. 이 중 몇나라는 EEC의 會員國이 되었다. 共同農業政策의樹立을 契機로 해서 우선 6個國, 그리고 뒤이어 9個國의 國別 農業政策이 農產物의 自由貿易,同一 水準의 補助, 合同 融資, 非會員國들에 對한 共同政策의 原則아래 統合되었다.

이런 要素들 때문에 아직도 共同農業政策은 EC 日常生活의 重要한 要素로 되어 있다. 農業政策이 共同體 全體로서 統合되지 않았던들 各国 政府가 自國 農業 또는 農業의 어떤 分野를 擁護하려 하고, 이것이 다른 會員國들에게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됨에 따라 가장 敏感한 이 部門의 貿易에는 커다란 障壁이 쌓였을 런지 모른다. 바로 이런 理由에서 EC는 會員國들이 EC 全體의 合意없이 포도주 生產者, 養豚業者등 特定 生產者들을 도우려는 一方的인 措置를 恒常 反對하는 것이다. 特定分野에 대한 이런 措置는 재빨리 經濟의 다른 部門으로 拡張되고, EC의 全體的인 基礎를 崩壊시킬 危險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II. 實 践 上 本 政 策

共同農業政策의 基礎가 된 基本原則들은 1957年 원래의 6個 會員國이 調印한 로마條約에서 비롯된다.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 農業生產性을 높힌다.
- 農業從事者들에게 괜찮은 生活水準을 保障한다.
- 市場을 安定시킨다.
- 合理的인 消費者 価格을 保障한다

그러나 이 条約은 共同政策의 開發을 為한 指針을 마련한데 지나지 않았다. 従來 各國이 다 달랐던 農產物価格支持制度를 単一制度로 統合시키는 細部作業은 오랜 協商을 거쳐야 할 問題였다. 이 制度의 主要 骨子는 60年代 後半에 完成을 보았으나 그 以後에도 政策은 끊임없이 바뀌고 發展되어 왔다. 이러한 變化過程은 지금도 繼續되고 있다.

英國, 덴마크, 아일랜드는 1973年 共同農業政策을 採択했다. 1977年 12月까지 過渡期를 두고. 이 期間中 새 政策에 完全 適應도록 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이 政策은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實施되었다. 우선 이 政策은 輸出規制와 門戶価格制度 (Threshold price system)를 통해 EC의 市場을 國際市場의 높은 価格이나 낮은 価格으로 부터 保護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価格介入이나 生產者에 대한 直接補償을 通해 基本的 農產品들에 대한 最底価格을 保障하는 것이다. 相異한 生產品에 대해서는 相異한 制度가 適用된다.

通貨混亂과 綠色換率

共同農業政策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 그것은 固定된 通貨價值를 基礎로 한 것이었다. 會員國들의 經濟가 더 密接하게 統合됨에 따라서 EC의 通貨는 더 安定될 것으로 期待되었다 이런前提下에서 各 會員國마다 同一한 支持價格, 農夫들에 對한 同一 水準의 補助金 支給, 安定된 農產品 交易의 構造등을 骨子로 하는 共同農業政策이 可能할 것으로 展望되었던 것이다.

지난 10年 동안 이러한 希望은 흐려지고 말았다. 여러나라의 通貨가 平價切上 또는 切下되고, 一部 通貨는 変動換率制로 바뀌어야 했던 것이다. 몇년이 끊어서 共同農業政策을 바탕으로 共同價格水準을 適用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各 會員國의 農產物 支持價格은 綠色換率(green rates)이라고 알려진 特別換率을 使用하여 計算되어 各 國別로 支持價格 水準이 決定된다.

이 綠色換率에 의한 農產品 價格水準의 算定方法은 사람들이 물건값을 計算할 때 使用하는 固定된 債還率이나 市場價值에 의한 算定方法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西獨의 農產物價格을 지탱하고 있는 綠色 도이치마르크貨는 도이치마르크貨의 市場價值보다 높다. 그리고 英国의 農產物價格을 지탱하는 綠色 파운드貨는 市場換率보다 훨씬 낮다. 이 책자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그린 파운드貨(1파운드 = 1.70463 計算單位)는 現在 市場換率에 맞추려면 3분자 1을 平價切下해야 한다. 現在 이 隔差는 파운드貨가 勢力を 回復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綠色換率制에 의해 農民들에 대한 公式的인 農產物 支持價格이 算定된다. 한 會員國으로부터 다른 會員國, 또는 會員國外의 地域으

로부터의 輸入 農產品은 “通貨補償額” (monetary compensatory amounts) 이라고 불리우는 賦課金, 또는 国境補助金에 의해同一 水準으로 調整된다. 따라서 英國으로 輸入되는 農產品은 輸入補助金을 받아 輸入業者가 實際 購入한 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英國市場에서 팔리게 되며, 또 非會員國에서 들여온 農產物일 경우 割引된 輸入稅를 물게 된다. 똑같은 方式에 의해 英國의 輸出業者가 비슷한 生產品을 輸出할 경우에는 賦課金을 물게 되어 파운드 貨의 平價切下에서 누릴 수 있는 競爭上의 優位가 없어지게 된다.

通貨補償額의 財源은 EC豫算에서 捏出되며 現在 英國으로 들어오는 輸入品에 대해 支給되는 額數는 年間 5億파운드 程度에 達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別途의 綠色 파운드貨 換率을 適用받고 있으며, 이 換率은 더 높은 支持價格이 算出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通貨補償額은 英國보다 額數가 작다. 아일랜드의 農民들은 이에 따라 英國의 農民보다 輸出이 더 쉽고, 農產物에 대한 價格을 더 높이 받는다.

綠色換率을 自動的으로 變更하는 案이 現在 檢討되고 있는데, 이 案은 貨幣價值의 變動에 따라 換率을 바꾼다는 것을 主要 骨子로 하고 있다.

食品價格에 끼치는 影響

農產品이 農場을 떠나 小売商까지 가는 동안 그 價格은 加工, 分配, 流通費用에 의해 2倍에 達하게 된다. 그러므로 生產品 支持價格의 百分率 變化는 小売價格에 制限된 影響밖엔 못 끼치며, 農民들의 市場價格이 이미 支持價格보다 더 높을 경우는 전혀 影

響을 뜯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介入価格 또는 門戶 価格과 같은 公定価格은 小売価格의 기틀을 만들어 주며, 특히 버터, 쇠고기, 설탕 등에 있어서 그렇다.

1960 年代에 이뤄진 EC의 共同価格 實施는 西獨에 있어서는 主要 商品의 価格下落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引上을 意味했다. 各国의 価格支持制度의 水準을 共同価格에 맞추어 調整했기 때문이다.

英國, 덴마크, 아일랜드등은 伝統的으로 낮은 水準의 支持価格을 實施해 왔다. 따라서 1973 年 이 세 나라가 EC에 加入했을 때, 세나라는 農產物価格을 77 年末까지 EC 全体의 水準으로 調整한다는 暫定的인 協約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英国の 食品小売価格이 比較的小幅 引上된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重要한 要素들과 時期的으로一致했다. 즉 世界食品価格의 急激한 昂騰, 높은 率의 인플레이션, 파운드貨의 価格低落과 이로 인한 綠色파운드貨 制度의 適用을 받지 않는 食品의 輸入価格 上昇과 때를 같이 했던 것이다.

過渡期가 끝날 무렵 英国에서 있었던 가장 극적인 価格引上品目은 감자, 커피, 茶등이었다. 이 商品들은 共同農業政策의 規制를 안 받는 品目들이다. 英国 政府의 推算에 의하면 1976 年 EC의 共同価格에 따른 物価調整은 食品小売物価指數의 2% 增加에 그쳤고 77 年에는 1.25%에 그쳤다.

在庫와 不足

氣象의 變化에 따라 어떤 해는 豊作이고, 어떤 해는 凶作일 수

있다. 그러므로 食糧生產은 過・不足의 사이클에 얹매이기가 특히 쉽다. 農產物 共同價格의 目標중의 하나는 一定한 價格을 維持하기 위해 供給을 均一하게 한다는 것이다.

農產品의 在庫는 収穫直後나 生產이 절정에 達할 무렵 最大量에 達한다. 牛乳는 초여름, 穀物과 쇠고기는 가을에 最大 備蓄量을 갖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그 價格은 最低線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더 많은 食品이 介入當局에 収買되어, 市場을 떠나 備蓄된다.

이 備蓄分은 消費量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價格條件이 좋아져서 이 備蓄分이 市場으로 풀려 나가면 價格昂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1977年 8月에는 穀物(페스타用 小麥은 除外)과 설탕의 放出用 備蓄量이 전혀 없었다. 쇠고기 備蓄量은 約 3주일분 消費量이었고, 버터는 4주일분 정도였다. 脱脂粉乳는 10個月分, 1百萬t이나 되어 가장 큰 問題가 되었다. 그러나 이 備蓄量조차도 77年 봄 大豆값이 치솟자 매우 有用하게 쓰였다.

一部 農產物, 특히 牛乳, 포도주, 사과, 배, 복숭아등 需給上 만성적인 不均衡을 빚는 品目들도 있다. 1977年 봄, EC 協議會는 牛乳供給을 需要에 맞추기 위한 計劃에 합의를 보았다. 生產者에게 賦課金을 물리고, 脱脂粉乳를 飼料로 使用하기 위해 더 많은 補助金을 支給하는 등 여러가지 消費獎勵策을 實施하고, 버터獎勵金을 支給하는 등이 그 骨子이다.

포도주 部門은 大豐을 이뤘던 73·74年 収穫으로 生產者들이 多量의 在庫를 안고 있어 아직도 影響을 받고 있다. 포도주의 需給均衡을 맞추기 위한 措置가 實施中에 있다.

最近에 겪은 食糧不足은 氣象으로 因한 것이었다. 1976 年 EC 는 有例가 없는 最惡의 旱魃을 겪었다. 西歐全域의 감자를 비롯 한 채소와 과일의 生產은 큰 打擊을 받았다. 그 影響은 77 年에 조차 가시지 않아 사과와 배의 作況은 좋지 않았다. 75 年에는 유럽지역이 설탕부족을 겪었는데, 이때는 共同體가 支給한 特別 輸入補助金으로 問題를 解決했다.

9 個國內의 湖水와 山岳을 팔아넘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価格介入을 위해 放出하는 備蓄量은 通常 總供給量에 比해 적은量 밖에 안되지만 価格이 이미 最低価格에 떨어졌을때 放出하면 市場에 나오는 全供給量에 대해 価格沈滯를 誘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最低価格을 維持하여 安定된 供給을 確保한다는 価格支持制度는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消費者補助金制度를 使用하면 生產者 価格을 抑制하지 않고 消費를 促進시킬 수 있으나 費用이 너무 많이 듈다. 그 代案은 輸出補助金制度이다. 貿易業者로 하여금 剩餘 農產品을 EC 밖의 나라에 팔고, 國際市場 価格이 EC 内 価格보다 낮을 경우 補助金을 支給하는 것이다. 輸出補助金制度는 共同農業政策의 뼈 수 없는一部分이다. 그러나 國際 価格이 EC 価格보다 높을 경우는 輸出補助金 대신 輸出賦課金이 賦課되어 輸出을 抑制하고 国内 価格을 낮게維持시킨다.

III. 變化하는 農業

農村革命

1958年後에 EEC로 統合되는 9個國 人口중 1千9百萬名이 農業을 生計로 했다. 이 숫자는 지금 8百50万으로 들어들어 全體 労動人口의 8.5%에 不過하다. 지난 30年동안 많은 사람들이 農業을 버리고 商工業分野로 就業함에 따라 西歐의 広大한 地域에는 事實上 社會的 革命이 進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一部 地域에서는 崩壞的인 效果를 가져왔다. 젊은 層이 農村을 떠난 地域에서는 全體人口로 보아 平均보다 老齡인 사람들이 남아서 農事를 짓고 있다.

英國에서는 이 離農現象이 2百年 以上동안 漸進的으로 進行되었다. 따라서 그 結果는 유럽의 다른 地域에서처럼 劇的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英國의 一部 地方과 아일랜드에서는 아직도 農村人口의 減少現象이 繼續되고 있다.

農業人口의 變動

(单位: 千名)

	1969	1975		1969	1975
西 独	2,533	1,822	룩셈부르크	16	9
프랑스	3,011	2,351	英 国	730	667
이탈리	4,023	2,964	아일랜드	298	252
네덜란드	341	299	덴마크	272	228
벨지움	191	136	計	11,415	8,608

農業人口의 減少는 1970 年까지 높은 水準이었으며, 1964~1974 年사이 EC 의 最初 6 個 會員國의 年平均 減少率은 4 %였다. 年 6 %의 벨지움과 9 %의 럭셈부르크가 最高의 減少率을 보였다 그 이후 減少率은 緩和되었으며. 특히 他 經濟部門의 雇傭展望이 흐려짐에 따라 減少速度가 떨어졌다. EEC 全體의 平均 農地規模는 現在 約 42 에이커인데, 이탈리의 경우는 17.3 에이커, 英國의 경우는 15.3 에이커로 國別 差異가 많다. 西獨, 벨지움, 네델란드는 平均보다 좁은 32 ~ 35 에이커 정도이며,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는 54 ~ 57 에이커 이상이다.

會員國間의 國別 差異는 크지만 大略 5 個 農家中 1 個 農家만이 50 에이커 이상의 農地를 保有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 農地의 55 %가 50 에이커 이상이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34 %, 西獨의 경우는 20 %. 이탈리의 경우는 7 %에 그친다. 農場의 合併으로 平均 農地規模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speed는 所有者나 占有者의 死亡, 隱退, 移住등 人的인 要素에 의해 決定된다. 1970~74 年 사이에 6 個 EC 會員國의 農場數는 每年 3.5%씩 減少했다.

EEC 農業人口의 앞으로의 趨勢는 他 經濟部門의 雇傭, 農業全般의 景氣, 農業人口의 平均年齡등 여러 要素에 의해 決定될 것이다 1975 年 農業部門 勤勞者의 25 % 이상이 55 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經濟全體로 볼때는 勤勞者의 14 %만이 55 세 이상이었다. 農業部門에 이처럼 高齡者가 많은 現象은 특히 아일랜드(農業部門 36 %, 經濟全體 19 %), 西獨(27.4 %, 13.1 %), 이탈리(24.5 %, 12 %)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이와같은 農業勞動力의 年齡構造는 農業部門의 雇傭人員의 수자가 繼續 떨어질 것임을 示唆한다. 現在의 農業人口의 22 %만이 13

~ 34 세 인데, 이에 比해 다른 經濟部門의 경우는 41 %에 이른다.

農業의 流線型化와 近代化

EC 豫算의 큰 뜻이 價格保障과 價格補助金으로 쓰이지만, EC는 各 會員國들이 農業을 流線型化, 近代化하고 特定 農業部門에 補助를 해줄 수 있도록 EC 全体로서 여러가지 計劃을 마련해 왔다. 農場近代化, 農場統合의指導, 農業情報 및 農業訓練등이 그例이다. 또 農業条件이 나쁜 지역에 대한 特別措置, 農產品의 加工 및 流通에 대한 融資등도 이 計劃에 包含되어 있다. 大部分의 경우 이런 計劃들은 EC와 會員國政府의 合同努力으로 이뤄지며 會員國들이 特定한 措置를 마련하면, EC는 EC 全体立場에서 여러가지 基準을 適用하여 이를 審議, 条件이 맞는 경우 財政支援을 해 주는 것이다.

近代化를 위한 援助一 이 指針에 의해 會員國들은 農業을近代化하기 위한 開發計劃을 選別的으로 立案한다. 이런 計劃은 比較的所得이 낮은 農場을 위한 것으로서, 6個年開發計劃을 通해 그所得水準을 같은 地域의 非農業部門과 비슷하게 向上시키는 데 그目的이 있다. 現在는所得이 팬참으나 몇년안에 低落될 危險이 있는 農場들도 恵沴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恵沴을 받을 農民들은 다음과 같은 基準에 맞아야 한다.

- 農業이 主業이라야 한다.
- 適切한 專門能力을 保有해야 한다.
- 開發計劃이 始作되면서부터 帳簿를 備置해야 한다.
- 開發計劃에 따라 作業을 해야 하며, 그 計劃은 自國의 権威

있는 機關의 承認을 받은 것이 라야 한다.

이 指針 아래 開發計劃에 參与하는 農民은 두 번째 指針 (아래를 參照)에 의해 所有者 또는 耕作者가 바뀌게 된 農地에 대해 우선적인 購得權이나 賃借權을 가지며, 開發計劃에 의해 所要되는 投資額에 대해 利子割引의 形態로 支援을 받게 된다. 그러나 農地購入, 家畜 (돼지, 家禽等) 購入費用은 이 恵沢에서 除外된다. 利子割引 대신 資金融資를 받을 수도 있다. 低當物이 充分치 않을 경우는 融資額과 利子에 대한 行政官廳의 保証으로 低當物을 대신할 수도 있다.

쇠고기의 生產獎勵, 農業簿記 備置, 農機械 신디케이트와 生產集團 灌溉 및 耕地整理 促進을 위한 特別項도 마련되어 있다.

기타의 國別 支援은 暫定的이거나 局地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制限을 받고 있다.

EC 가 여러가지 基準에 비추어 도든 措置에 대한 農業基金으로부터의 援助는 總 所要額의 25%이며, 差額은 會員國이 負担하게 된다.

英國에서 이 指針을 “農場・園芸開發計劃”, 아일랜드에서는 “農場近代化計劃” 이란 이름으로 執行되고 있다.

離農에 대한 補助 — 이 指針은 農事 일을 抛棄한 55~65세 사이의 農夫들에게 年金을 주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이 年金은 — 既婚者에게는 年間 900 計算單位 (units of account) 이상, 独身者에게는 600 計算單位 이상 — 한꺼번에 全額이 支払되며, 受益者の 年齡과 収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農場主와 農場의 被雇傭者를 綱羅한 60~65세 사이의 申請者에 限制 農業基金으로부터 寄附金이 支給될 수도 있다. 農業人口가 全勤勞人口

의 15%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会員國에 있어서는 55~65세 사이의 全 農業從事者들에게 申請資格이 賦与된다. 保有農地의 크기에 따른 国家의 補償金도 支給될 수 있다.

申請者가 隱退 補償金을 받고 農業을 떠남으로써 남게 되는 農地는 最少한 12 年間 貸貸를 주거나, 自己의 所有農地를 앞에 말한 開發指針에 의해 開發하고 있는 다른 農場主에게 팔거나, 아니면 農業에 使用하지 않고 林業이나 休息, 娛樂 및 기타 公共用途에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農地는 또 위에 말한 目的을 위해 会員国政府가 設立한 特別機關에 最少한 12 年以上 讓渡할 수도 있다.

農業基金은 보통 이같은 計劃(英國에서는 農場合併計劃으로 알려져 있다)에 대해 国家가 負担하는 經費의 25%를 充當해 준다. 이 金額은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의 比率이 EC의 平均보다 높은 地域과 1人当 GDP 가 EC 平均보다 낮은 地域에 대해서는 65% 까지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이 条件의 適用을 받는다.

情報서비스와 訓練施設에 대한 条項 一 이 指針은 農業從事人口에게 그들의 社会的, 經濟的 狀況을 改善 可能케 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며,個人이 새로운 情勢에 適用할 수 있게 돋고, 情報와 자문을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情報서비스制度의 創設과 發展을 위한 것이다.

이 条項에는 社会的, 經濟的 問題들을 处理하기 위한 助言者들의 教育과 職業訓練을 위한 對策도 包含되어 있으며, 또 会員国들이 農場主와 被雇傭者들에게 高度의 專門의 農業技術을 習得도록 鼓勵하는 計劃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EC의 社会基金도 이런 措置들을 위해 다소의 財政支援을 떠 끌도록 되어 있다. 會員國들은 이 指針의 該當者들이 訓練을 받고 있는 동안 一定 収入을 保障받을 수 있게 特別支援制度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營農困難地域의 農業 - 이 措置는 氣候와 地勢의 影響으로 當農条件이 나쁜 農業地域, 바로 그 때문에 人口流出이 많고 農業이衰退하는 地域에 대해 直接的으로 支援을 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이 計劃에는 大部分 會員國의 여러 地域들이 該當되고 있으며, 農場의 規模를 基礎로 算定한 直接支給金이 提供되며, 条件이 좋은 資金融資와 利子率이 適用된다.

EC內 農業生産의 約 10%가 이 直接支給金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面積上으로는 EC耕作面積의 約 4분지 1에 該當한다. 英国의 오랜 丘陵農業地帶도 이 範疇에 듈다. EC는 自体 豊算에서 所要額의 25%를 担当해 준다.

加工과 流通 - 1964年에 마련되었던 食品加工 및 流通部門의 投資를 위한 規定에 따라 支給되던 直接的인 融資金은 이제 사라졌고 共同体와 會員國의 合同計劃이 새로 마련되었는 바, 이 計劃에 따라 會員國 각각은 特定 部門에 대한 投資計劃을 짜도록 되어 있다. 承認을 받은 計劃은 EC豫算으로부터 25%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林業 - EC政策協議會는 山林造成을 위한 案을 檢討中이다.

生產者集團 - 위에 言及한 세가지 指針外에도 關僚協議會는 生產者組織의 發展을 돋고, 加工 및 流通施設의 近代化를 위한 措置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IV. 政策의 執行

總論

EC에는 閣僚協議會(The Council of Minister), 유럽委員團(The European Commission), 議會(Parliament), 法院(The Court of Justice) 등 4個의 重要機構가 있다.

閣僚協議會(브뤼셀과 룩셈부르그에서 모인다) : 各国 政府는 協議會에 1席씩을 차지하며, 會議가 열릴때 어떤 政府官吏를 보내도 상관이 없다. 로마條約에 의하면 大部分의 案件에 있어서 意思決定은 多數決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전원일치가 規則처럼 되어 있다. 現在는 어떤 會員國이 自己의 決定的 利益에違背된다고 看做하고 있는 措置를 나머지 會員國들이 多數決에 의해 採択할 수 없다는 것이 規則처럼 通用되고 있다.

유럽委員團(The European Commission, 브뤼셀) : 두가지 役割을 하고 있다. 하나는 EC政策의 案件들을 起草하는 政治的 役割이다. 委員團은 EC創設의 바탕이 되는 諸條約의 守護者로서의 権能을 지니고 이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委員團의 두번째 機能은 執行部와 事務局으로서의 役割이다.

委員團은 13名으로 構成되며, 4年 任期로 되어 있고, 各己 特定 分野의 業務를 專担하고 있다. 委員들은 모두 會員國에서 차출되어 왔지만, 本国政府 및 協議會로 부터 干涉을 받지 않고 独自的으로 行動하며, 모든 決定들에 대해 共同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다. 유럽議會만이 이들의 辞任을 강요할 権限을 갖고 있다.

이 委員團은 条約이나 協議會에 의해 具體的으로 委任된 特定分

野의 政策에 대해서 — 특히 農業政策과 競爭政策의 具現에 있어서 — 独自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自由를 가지고 있다.

유럽議會 (The European Parliament, 스트라스부르그와 룩셈부르그에서 会合) : 198席의 議席을 갖고 있으며, 議員은 EC 會員國의 議會로 부터 任命된다. 委員團과 協議會에 대해 質疑를 벌일 權限을 갖고 있으며, 여러가지 問題를 討論하고, 公式意見을 委員團에 伝達한다. 3분지 2 이상의 多數決에 의해 委員團을 解散시킬 수 있는 公式制裁權을 갖고 있다. 議會는 豫算에 대한 權限이 있으며 會員國들은 現在 議員들을 直選하는 立法措置를 採論하고 있다.

法院 (룩셈부르그 所在) : EC 法과 関聯된 法의in 紛争은 法院에서 解決한다. 9名의 法官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本国政府의 同意아래 6年 任期로 任命된다. EC 庫下機關, 各国政府, 会社, 個人등은 EC 法에 関한 問題에 대해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政策決定을 위한 對話

EC의 諸政策 決定過程의 核心을 이루는 것은 閣僚協議會와 유럽委員團 사이의 雙方 通行의in 對話이다. 重大한 決定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도 無制限의 權限을 갖고 있지 않다. 政策을 構想하고 앞으로의 措置에 대한 案을 起草하는 것은 委員團의 業務이지만, 會員國 모두의 代表가 參席하는 閣僚協議會만이 이 案件에 法律의in 힘을 賦与할 수 있다.

實際로 重要한 案件은 대개 協議會, 委員團 및 기타 EC의 機關이 參与한 가운데 長期間 討議가 繼続된 끝에 進化되어 나온다 만일 閣僚協議會가 委員團의 案이 受諾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되었을 때 委員團은 受諾可能한 案이 될 때 까지 調整作業을 繼

統한다.

案이나 政策이 委員團에 의해 草案의 形態로 提議되기 오래 전부터 協議가 벌어진다. 各国 政府와 公共官廳은 政策의 細部事項이 마련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委員團과 定期的인 接触을 가지며, EC 내의 圧力團體들도 独自的인 見解를 開明하면서 密接한 関係를 맺으려 努力한다.

農業問題에 대해 委員團 傘下의 農業理事會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는 各国 政府 및 農業關係機關의 專門家들을 選拔하여 招請, 實務陣을 構成하여 農業担当 委員에게 提出할 政策草案의 準備過程에서 諮問을 받는다. 이 草案은 公開討論의 対象이 된다. 委員團은 EC의 農民委員會 및 農協委員會 (COPA 및 COGECA)의 意見을 聽取하고, COPA 및 COGECA 역시 이 問題를 다루기 위해 自體的으로 諮問委員會를 만들고 이 協議過程을 強化하기 위해 繼続的으로 努力を 기울인다.

이 草案은 또 經濟·社會委員會에도 回付된다. 이 機構는 勞動組合, 雇傭主 및 專門職種 徒事者의 組織, 그리고 “全體的인 利益”의 代表者들을 網羅한 143名의 人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草案은 또 유럽議會의 農業委員會에 回附될 수도 있다. 重要問題에 대해서 議會는 最終 決定이 내려지기 前에 詳細한 報告書를 協議會에 提出하게 된다.

이 協議過程의 어느 段階에서든지 草案은 批判과 評價를 받은 대로 修正될 수 있다. 農業特別委員會는 法案에 대해 技術的인 諮問을 해줄 수 있고 브뤼셀에 駐在하는 會員國들의 大使로 構成된 常駐代表委員會는 閣僚協議會가 委員團의 提案을 承認 또는 拒否하기에 앞서 最終 協議의 機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새로운 地域으로 政策을 拡大한다든가, 年中物価를凍結措置한다든가 하는 “根本的”으로 重大한 問題만이 協議会의 決定까지 이르는 全 過程을 모두 經由한다. 共同農業政策을 매일매일 圓滑하게 運用하기 위해서는 많은 条例 (regulation) 가 必要하다. 이 点에 있어서 로마條約은 상당한 立法權을 委員團에 賦与했다. 이 權限은 協議会에 의해 더욱 拡大되어 왔다.

各種 管理委員會도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이 委員會들은 主要 生產品別로 構成되어 있는데 委員團의 条例에 대해 諮問을 하고 承認하는 일을 하고 있다. 每年 約 1千件의 委員團 条例와 決定이 該當 管理委員會의 討議를 거쳐 採択된다.

各 委員會는 會員國의 代表들로 構成되어 있다. 보통 各 行政部處의 管理나 各國 市場機構의 實務要員으로 構成되며, 各國 代表團은 나라별로 該當國 政府가 任命하지만 委員會 全體는 委員團의 要員이 主宰한다. 票決은 國別로 加重值를 주며, 總票數는 58票지만 加重值가 붙은 多數決은 41票이다.

委員團이 어떤 措置가 必要하다고 決定했을 때 — 예를 들어 쇄지고기에 대한 輸入賦課金을 變更하거나 暫定의으로 撤廢할 경우 등 — 委員團은 價値問題를 다루는 管理委員會에 決定草案을 附屬한다. 이 委員會는 이 決定을 討議하고, 會員들간에 異見이 있을 때는 票決을 한다. 만일 票決結果가 賛으로 나올 경우 案件은 그것으로 終結된다. 그러나 만일 加重值가 붙은 票數에 의해 過半數가 反對를 하면 決定草案은 補完作業에 붙여진다. 그러나 關僚協議会는 1個月안에 그것을 拒否하거나 修正할 수 있다.

大部分의 管理委員會의 業務는 農業政策과 関聯한 賦課金 및 기타 細部事項을 定하는 일이다. 實際로 委員團은 모든 決定을準

備할 때 그것이 委員會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努力하고 있으며, 이 制度는 EC를 위해 훌륭한 奉仕를 하고 있다.

政策의 決定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다른 두개의 委員會가 있는데, 그것은 基金委員會와 農業構造常設委員會이다. 基金委員會의 財政에 関한 意見은 委員團에 까지 拘束力を 갖고 있다.

閣僚協議會의 各國 代表들의 모임이나 委員團에 의해 決定된 EC의 政策은 여러가지 經路를 통해 表現된다.

“條例”는 모든 會員國에게 適用된다. 이것은 모든 点에서 拘束力を 가지며, 實施되는 순간부터 全 會員國內에서 直接的인 法律로서 強制力を 갖게 된다.

“指針”은 어떤 目的을 闡明하는 것으로서, 會員國에 대해 拘束力を 지니지만 實施하는 手段은 各國 政府에 맡겨진다. 通常一定期間안에 關係되는 国内法을 改正하는 方式으로 具現된다.

“決定”은 政府, 機關, 또는 個人에게 通報되어, 通報받은 当事者에 대해 모든 点에서 拘束력을 갖는다.

“勸獎事項”이나 “意見”은 拘束력은 없으나 보통 委員團의 政策에 대한 見解를 담고 있다.

政 策 立 案

委員團의 業務中相當部分이 農業政策의 細部執行事項이다. 특히 賦課金을 策定하는 일이 重要業務이다. 委員團의 實務者들은 每日 브뤼셀에 報告되는 穀物의 國際價格(c.i.f 基準)을 基準으로 穀物에 대한 賦課率을 計算해야 하며, 그 結果를 各 會員國의 EC代行機關에 通報한다. 똑같은 業務가 쇠고기에도 適用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

輸出補填金의 支払이나 價格支持를 위한 収買는 伝統的으로 流通管理를 맡아 온 政府部處나 國家機關에서 遂行한다. 이런 機關들은 収買한 穀物을 貯藏하다가 짜위의 業務를 私企業에 맡겨버릴 수도 있다.

財源의 來路

農業政策의 資金을 担当해 온 共同体의 財政制度는 1970年 12月로 終了되었다. 그때까지 共同体의 價格支持措置에 所要되는 費用은 유럽農業指導 및 保証基金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프랑스에서는 FEOGA로 불리움)에 의해 充當되었다. 農業의 能率 및 下部構造의 改善을 위한 費用의一部도 이 基金이 받았었다.

유럽農業指導 및 保証基金 (FEOGA)

(単位 : 百万計算單位 (u.a), 1976年 豫測)

	輸出 交付金	價格 支持	計		輸出 交付金	價格 支持	計
穀 物	392	300	692	남 배	6	202	208
쌀	29	1	30	生 선	5	3	8
乳 製 品	752	1,178	1,930	亞 麻 。 大 麻	-	17	17
油脂 및 食用油	8	433	441	種 子	-	22	22
설 탕	95	175	270	ホ プ	-	15	15
쇠 고 기	149	602	750	取 得 報 償 金	-	392	392
돼 지 고 기	42	8	50	通 貨 報 償 金	-	611	611
제 란 . 家 禽	20	-	20	保 証 基 金 支 払 総 計	1,586	4,249	5,835
과 일 . 채 소	45	128	173	指 導 資 金 支 払 総 計			325
포 도 주	4	147	151				

1971年年初부터 공동체는 独自의 岁入을 갖는 計劃을 出帆시켰다. 이 計劃은 1969年 12月 23日, 브뤼셀에서 마라톤會議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 計劃은 従來 各國의 財務省이 共同体에 基金을 寄付해 오던 方式 대신 食品輸入에 賦課되는 賦課金과 關稅를直接 共同体의 豊算에 彙屬시키는 方案이다.

이 計劃은 두가지 主要 局面을 지니고 있으며, 共同体가 自體의 政策을 執行하는데 所要되는 適正의 財源을 마련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従来에는 政策 各 部門의 財源을 敘出하기 위해 別個의 措置들을 取해야만 했었다.

輸入賦課金과 關稅의 10%는 徵收費用에 充當하기 위해 會員國들에게 還給된다. 特定 會員國에 의해 岁入의 水準이 急激하게 變化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百分率에 의한 變化幅이 事前에 制限되어 있다. 이러한 措置들은 1977年末까지 完全히 自動化될 것이며, “聯邦歲入으로 財源을 充當하는 聯邦豫算”이 마련되는 것이다.

英國, 아일랜드, 덴마크는 合意된 規模에 따라 1973年에서 77年까지 이르는 期間동안 共同体의 岁入制度를 採択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그후 2년동안 세나라의 寄与金을 制限하는 特別條項이 마련되어 있다.

1970年까지 効力を 發生한 潛定의인 協定에 의한 유럽農業基金은 嚴格한 意味로는 基金이라기 보다 決済制度였다. 會員國들은 自體로 適切한 経費를 支出한 후, 請求書를 共同体의 財政担当 行政官에게 보내 幷済를 받는 形式이었다.

새로운 制度의 導入으로 會員國의 價格·流通担当機關은 共同体에 推定豫算案을 提出한다. 그러면 所要資金은 會員國 政府를 통해 後

拵形式으로 支給되는 것이 아니라 必要할 때 쓸 수 있도록 前渡된다.

名称이 가르치듯이 “유럽農業指導 및 保証基金”은 2個의 部分으로 나뉘어 지는데 保証基金쪽이 월선 더 크며 共同体 全體豫算의 65%를 占하고 있다. 農產物 價格支持의 支出額中 事實上 全額이 會員國 政府가 아닌 共同体에 의해 支給되고 있음을勘案한다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共同体가 市場價格支持에 資金을 支援한다는 原則은 必然的으로 農產物의 自由貿易으로 帰着하게 된다. 그 것은 한 會員國의 生產이 急速히 拡大될 경우라도 이로 因해 다른 會員國의 價格을 不當하게 下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共同体의 政策은 共同으로 決定되고, 共同으로 資金을 投入하는 것이다.

共同体豫算中 保証基金의 큰 部은 乳製品과 穀物部門의 價格支持를 위해 쓰인다. 國際市場의 價格이 높을수록 이 費用은 적게 들고 EEC豫算의 더 많은 部분이 食品에 대한 輸入賦課金 외의 收入에 依存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農業基金은 또 共同体 内部의 交易에 適用되는 報償額의 支出도 떠 맡고 있다.

共同体의 FEOGA豫算中 指導部門의 額數는 — 当初 保証基金의 3분지 1 水準으로 策定되었다 — 每年 3億 2千 5百万 計算單位 (u.a)에 達하고 있다. 이 資金은 農業構造에 관한 指針 및 共同体 水準에서 合意한 共同体의 農業과 漁業의 能率을改善키 위한 여러 計劃의 施行에 使用된다. 食品流通과 加工部門의 主要資本計劃에 대한 無償援助 역시 이 資金에 의해 充當된다. 委員團은 農業構造委員會와 함께 이 計劃들의 執行에 責任을 치고 있다.

V. 農產品 市場의 組織

共同体 6個国의^{*} 9個國의^{**} 自給率

	1968/69*	1973/74**	1974/75**
穀物			
計	94	91	95
軟麦	120	103	112
硬麦	60		
大麦	107	103	107
오트	96	96	99
옥수수	55	59	55
설탕	103	91	87
肉類			
計	93	98	96
쇠고기	89	99	100
돼지고기	99	100	99
家禽	98	103	101
乳製品			
全脂牛乳	100	100	100
버터	113	93	100
치즈	102	107	104
脱脂牛乳	148	150	147

穀 物

穀物은 EC農產品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畜產農家에게 가장支出이 많은品目이다. 따라서 穀物의 流通管理調整 및 共同体内의 穀物價格水準을 매년 결정하는 일은 共同農業政策과 共同体의 農業經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어 있다. 共同体의 制度에 따르면 穀物形態에 따라 目標價格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價格은 루르제역의 두이스부르크처럼 穀物의 供給이 가장 모자라는 共同体内의 지역에서 生產者들이 公開市場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共同体内의 모든 公定穀物價格처럼 目標價格은 農場渡價格이 아니라 倉庫 및 도매상에 인도된 후의價格이다.

다른 모든價格들도 目標價格에 연관되어 있다. 그 첫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共同体域內 모든 항구에 적용되는 門戶價格(threshold price)이다. 門戶價格은 로테르담에 謝陸된 穀物이 두이스부르크의 부족지역에 수송되었을 때 그 곳에서 目標價格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들게 팔릴 수 있는 수준으로 算定된다. 門戶價格은 모든 항구에 공통되지만 계절과 더불어 引上調整되어 域內 生產穀物의 年中 창고비용의 추세를 반영토록 되어 있다.

여러가지 賦課金이 매일 브뤼셀에서 계산되어 국제시장의 最低 C.I.F 오퍼價格과 문지방價格과의 격차를 補填하고 있다. 이 賦課金은 非會員國으로부터 共同体로 들어 오는 每積送品에 대해 부과되며, 따라서 生產者들은 輸入品에 의한 어떠한價格低落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輸入統制는 輸入品이 들어오되 國內生產에 剩餘量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內需市場價格을 규제하는데 効力を 発生한다. 國內生產이

需要를 초과할 경우에는 介入과 收買가 필요하게 된다.

모든 谷物에 대한 介入価格은 目標価格과 같은 수준이며, 目標価格보다 12 ~ 20 % 밑돌게 될 때 발동되고, 谷物年度 중 계절별로引上된다. 大麦, 옥수수, 小麦등에 대해 지역별 支援価格을 적용하던 종래의 制度에 대신해서 单一介入価格制度가 採択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飼料用 谷物은 동일한 수준으로 支持되며, 高級 品質의 小麦에 대해서는 높은 收益을 보장해 주기 위해 特別조항이 적용된다

公式 谷物 価格*

1977 / 78

		計算单位 / t	파운드 / t **
듀럼 小麦	目 標 価 格	224.27	131.57
軟 小 麦	目 標 価 格	158.08	92.74
	基 本 介 入 価 格	120.06	70.43
大 麦	目 標 価 格	144.79	85.04
	基 本 介 入 価 格	120.06	70.43
燕 麦	目 標 価 格	155.12	91.00
옥 수 수	目 標 価 格	144.97	85.04

* 1977 年 8 月 価格

** 1 파운드 = 1.70463 計算单位 (u.a) 로 計算

谷物을 介入価格에 팔려고 하는 업자들을 위해 西独, 프랑스, 이탈리, 英國에는 각각 11 個의 收買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텐마크에는 8 곳, 아일랜드에는 5 곳, 벨지움에는 2 곳, 베델란드에는 1 곳이 마련되어 있다. 이 센터들은 여러개의 支所를 거느리고 있으

며, 收買에 응한 穀物의 質과 量이 基準에 합당하기만 하면 정해진 價格을 지불하고 收買한다. 穀物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들은 公開市場에서 더 좋은 價格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介入價格대로 收買에 応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共同体市場에서 팔릴 수 없는 穀物은 대개 수출된다. 共同体의 價格이 國際價格보다 높으면 輸出補助金, 또는 欠損補填金이 지급되어 가격차이를 메꿔준다. 그 水準은 國際價格, 對內의 剩餘量, 미래의 動向등 여러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委員團의 담당자가 결정한다. 欠損補填金은 또 엿기름(malt), 녹말등 加工食品에도 지급된다. 국제가격이 EEC가격보다 높을 때는 輸出穀物에 대해 賦課金이 징수된다.

듀럼小麦, 페이스타用硬麦의 生產者에게는 特別欠損充當金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非會員國에서 다량 輸入해 오는 이 品目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穀 物 生 产

(単位 : 千t, 1976)

	合 計 *	小 麦	大 麦	オト其他	輸 出
西	18,992	6,623	6,409	3,310	380
프 랑	31,658	15,300	8,100	1,886	5,300
리	16,139	5,990	762	976	5,082
이	1,136	707	263	102	5
네	1,913	988	686	165	18
벨	80	18	36	23	0
록	13,870	5,070	7,877	900	2
英	1,312	216	973	123	0
아	5,888	578	4,767	307	0
일	90,917	35,489	29,873	7,792	10,786
벤	218,994	45,780	8,341	9,544	134,488
9	185,629	93,230	48,688	15,638	11,717
美					
소					

* 쌀 제외

** 1972-74 平均

설 탕

설탕生産이 開發途上國에 대해 갖는 重要性과 유럽의 사탕무우 재배농가가 이 作物에 대해 느끼는 매력으로 인해 共同体는 다른 어면 농산품 보다도 설탕에는 더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설탕의 규제방법으로는 코타制, 支持收買, 生產超過에 대한 罰過金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共同体의 설탕 수요량은 부분적으로는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으로充当되고 있다. 이들 開途國들은 사탕수수생산에 經濟를 크게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共同体는 설탕수요량의 대부분을 域內에서 生產되는 사탕무우와 프랑스 海外領土에서 生產되는 사탕수수로充当하고 있다.

로메協約 (Lome Convention)에 의해 共同体는 매년 1.3 百萬 t의 사탕수수 설탕을 피지, 모리셔스, 카리브海의 설탕生産者 및 印度등 開發途上國으로부터 輸入키로 協定이 맺어져 있다. 이 協約의 時限은 無期限이며, 海外의 生產者들은 共同体 域內의 支持価格과의 連動価格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

共同体내의 주요 설탕 剩餘地域의 설탕생산에 대해서는 매년 目標価格이 정해진다. 그 다음 9,136,000 t의 설탕에 대해서는 介入価格制度가 적용되며,共同体의 설탕부족지역은 이 제도에 의해 市場이 지탱된다. EEC의 설탕 생산자들은 9,136,000 t의 설탕에 대해서는 전량 介入価格의 恵沢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본量은 그 다음 會員國들에게 할당되며, 會員國들은 自國內의 설탕회사등에 코타를 配定한다. 英國이 할당받는 기본量은 1,040,000 t이다.

協議会는 매년 基本量을 초과하는 最大量을 결정한다. 77/78 年度의 最高量은 基本量보다 35%가 많은 量이었다. 그러나 基

本코타는 전량 介入価格의 惠沴을 받지만 基本量을 초과, 最大量에 이르는 설탕生産量은 77/78年の 경우 30%의 生産賦課金이 賦課되었으며, 이 賦課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支持水準은 그만큼 감소되었다. 이 코타量 外에 생산되는 설탕 —— 소위 C설탕 —— 은 価格支持의 惠沴을 받지 못한다. 共同体는 이 설탕의 域內市場版壳와 輸出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域内外 市場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精糖의 生産과 消費

(单位: 千t)

	生 產	消 費
	1975/76	1974/75
西 独	2,330	2,226
프 랑 스	3,309	2,037
이 텔 리	1,339	1,552
베 멜 린 드	841	588
벨 지 움	659	358
英 國	641	2,598
아 일 랜 드	187	145
덴 마 크	389	240
9 個 國	9,695	9,744

설탕生産会社에 적용되는 生産統制는 사탕무우 재배농가에게 보장된 価格에 반영되어 있다. A코타 설탕에 사용되는 사탕무우는 B코타 보다 높은 価格이 보장되어 있다. 이 코타 외의 사탕무우

에는 정해진 最低価格이 없다.

설탕 및 사탕무우의 公式価格 (1977/78)

	t 当 u/a	t 当파운드*
사탕무우 最低価格	25.43	14.92
基本코타 초과 最大코타까지의 사탕무우価格	17.80	11.20
精糖의 目標価格	345.60	202.70
精糖의 介入価格	328.30	192.60

* 1 파운드 = 1.70463 u.a

共同体 域外에서 들어오는 精糖, 原糖, 糖蜜등의 自由市場 輸入品들은 문지방価格의 적용을 받으며, 穀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의 賦課金이 부과된다. 국제가격이共同体価格보다 높을 때는 輸出賦課金 및 다른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 세계의설탕需要增加와 EEC域內의 凶作으로 인한 1974年과 1975年的 심각한설탕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共同体는 特別輸入計劃에 합의했으며, 이 計劃에 따라 國際市場에서 50萬t의 설탕을 구입하여 많은 補助금을 支給, 然 価格으로 EEC內의 소비자들에게 放出했다.

牛乳와 乳製品

우유에 대한 共同価格政策은 1968年 4月부터 실시되었다.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에 대한 최종적인 條例가 마련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실시되었다. 우유에는 共同目標価格이 정해진다. 이 価

格은 우유生産者들이 酪農場에 우유를 인도하면서 받아야 할 價格으로 共同体 域內外의 市場販路 사정에 좌우된다.

共同体 域內農場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약 4분지 1만이 生乳로 소비된다. 따라서 價格管理上 力点이 주어지는 部門은 乳製品 쪽이다. 이 政策은 버터, 脱脂우유, 그리고 이탈리의 경우 치즈(이탈리에서는 버터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에 대해 介入價格制度를 마련함으로서 目標價格을 유지하는데 目的이 있다.

우유의 公式價格 (1977/78*)

	u.a / t
우유의 目標價格	173.50 10,326p/ℓ**
버터의 介入價格	2309.50 £ 1334.87/ℓ**
脱脂粉乳介入價格	940.90 £ 543.83/ℓ**
脱脂粉乳補助金(飼料用消費)	390.00 £ 225.42/ℓ**
脱脂우유補助金()	55.00 3.285p/ℓ**

* 1977年 9月16日부터

** 1파운드 = 1.73013 u.a

共同体内의 生산자들은 門戶價格에 의해 낮은 輸入價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12개의 先導的(Pilot) 生產品에 대해 門戶價格이 策定되어 있다. 輸入業者는 국제 c.i.f. 價格과 門戶價格間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賦課金을 물어야 한다. 다른 生산품에 대한 문지방價格은 先導品目으로부터 산출된다.

우 유 및 乳 製 品

(単位 / t, 1975)

		우 유	버 터	치 즈
西	独	21,926	520	619
프 랑	스	30,910	559	943
이 탤	리	9,760	62	500
네 빌	란 드	10,221	204	377
벨 지	움	3,763	93	40
룩 셈	부 르 그	259	8	2
英	國	16,240	48	234
아 일 랜 드		4,561	86	60
멘 마	크	5,100	139	152
9 個 国 合 計		102,740	1,719	2,927

現在 共同体의 酪農農家들은 域內消費量보다 많은 우유를 生산하고 있다。 그려므로 閣僚協議會는 1977年 需要를 늘이고 生產을 줄이는데 主眼을 둔 새로운 酪農施策에 합의했다。 이 조치는 連帶責任賦課金으로 알려진 生產에 대한 賦課金, 酪農者의 離農獎勵補助金, 버터에 대한 消費者補助金, 脫脂粉乳 사용자에 대한 特別원조, 학교급식用 牛乳에 대한 補助金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共同体는 매년 20萬t의 脫脂粉乳를 世界食糧計劃에 따라 開發途上國에 供与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그 乳製品의 판로를 英國市場에 크게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共同体는 뉴질랜드로부터 일정량의 우유를 特別히 정한 價

格으로 輸入한다는 협정이 맺어졌다. 버터의 輸入코다는 1980年 까지 110,000 t이 될 것이다. 치즈 輸入에 대해서는 長期的인 協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最近 몇년동안 共同体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市場은 심한 週期的 경향을 보여왔다. 1972/73年 期間중에는 심한 不足 현상과 높은 價格을 보였고, 1974年에는 供給이 많이 늘어나고 낮은 價格을 보였다. 1974年에는 市場組織에 있어서 價格介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그때까지는 市場組織이 輸入價格의 통제에 크게 依存했었다.

共同体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自由市場은 1968年 4月부터 4年間의 과도기를 거쳐 發足을 보게 되었다. 이 調整에 있어서 中枢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指導價格(guide price)이다. 指導價格은 生產者가 받아야 할 目標價格 역할을 하면서, 또 輸入統制와 介入의 방아쇠장치로서의 역할도 한다.

市場價格이 生產者에게 흡족하지 못할 때 介入當局은 保障價格(指導價格의 90%)으로 이를 收買하여 出口를 마련해 준다. 일부 會員國政府가 支持收買를 껴리고 있고, 저장창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1974年 이 制度에는 큰 융통성이 부여됐다. 보다 질서있는 流通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肥肉牛에 대해 直接 季節別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採択되었다. 이 計劃은 최소한 1978年 봄 까지 실시될 것이다. 유럽委員團은 현재 直接支給制度가 價格介入과 함께 쇠고기價格支持制度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案을 내놓고 있다.

共同体로 輸入되는 生牛는 16 %의 關稅를 물어야 하고, 輸入쇠고기는 種類에 따라 20 ~ 26 %의 關稅를 치워야 한다。이 關稅는 1972年과 1973年 잠정적으로 철폐되거나 引下되기도 했었지만 共同對外關稅率의 일부로 되어 있다。반면 賦課金制度는 웅통성이 있다。

肥肉牛와 쇠고기에 대한 賦課金은 每週 결정된다。 關稅를 포함한 輸入價格과 指導價格과의 격차를 이 賦課金으로 메우도록 되어 있으나 輸入業者가 치루는 賦課金의 比率은 內需市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이것은 보통 參考價格(reference price)이라고 알려진 代表的 市場價格을 기초로 算定되고, 各國의 소 頭數에 따라 평가된다。여기서 말하는 參考價格이란 各國別로 算出된 후 共同体에서 集計해서 나온 參考價格을 말한다。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나라의 침체된 市場이 共同体 參考價格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쇠고기 및 송아지의 公式價格(1977/78)

	t 当 u/a
成牛의 指導價格	1229.00 £ 72.10 / 100 kg*

* 1 파운드 = 1.70463 u/a

参考價格이 指導價格의 106 %에 달하게 되면 輸入業者에게는 賦課金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104 ~ 106 % 일 경우에는 賦課金의 4분지 1이 부과되며, 102 ~ 104 % 때는 절반을, 100 ~ 102 % 때는 4분지 3을 물어야 한다。参考價格이 일단 指導價格보다

떨어지게 되면 賦課金 全額을 물어야 하며, 參考価格이 指導価格의 96 ~ 98 %일 때는 105 %, 90 ~ 96 %일 때는 110 %, 90 % 미만일 때는 114 %의 賦課金을 물어야 한다.

内 類 生 產 (1975)

	쇠 고 기 송아지고기	돼 지 고 기	家 爲	양 고 기
西 独	1,365	2,748	290	20
프 랑 스	1,868	1,534	824	131
이 텔 리	745	732	902	32
네 렐 란 드	413	988	300	18
벨 지 움	282	629	114	4
룩셈부르그	10	9		0
英 國	1,131	814	612	263
아 일 랜 드	564	102	35	46
벤 마 크	242	740	90	1
9 개 국	6,620	8,296	3,167	515

돼 지 고 기

돼지市場은 변덕이 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생산자들이 쉽게 生產을 拡張할 수도 있고, 縮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빛어지는 현상으로, 이 때문에 돼지의 流通管理制度는 대단히 複雜하다.

共同市場은 간헐적인介入을 통해 内需市場의 最低価格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介入価格은 生產者들에게 生

產을 축소하도록 不利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輸入은 補完的이고 多樣한 賦課金制度에 의해 통제된다.

돼지에는 目標価格이 없지만 基本価格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域內의 市場支持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市場価格(参照価格으로 나타난다)이 基本価格以下로 내려가면 介入措置가 실시된다. 介入措置가 실시되는 실제 価格은 基本価格의 85 ~ 92 % 線이다. 介入의 수준과 收買品目의 결정은 委員團의 전담사항이지만 養豚管理委員會와의 広範한 협의를 거친후 결정된다.

每分期마다 委員團은 管理委員會와 합동으로 輸入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水門価格(sluicegate price)을 결정한다. 만일 이 水門価格보다 낮게 輸入品이 共同体안으로 들어오면 그 가격을 水門価格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充當賦課金(supplementary levy)이 부과된다. 輸入品은 언제나 다음 두가지 요소로 된 여러가지 賦課金을 물어야 한다.

- 돼지 飼料用 穀物의 국제시장 가격과 共同体内 가격과의 差異
- 水門価格의 7%, 이것은 共同体内의 生산자들에게 그만큼 特惠를 주기 위해서이다.

欠損補填金의 支給은 委員團이 정하며, 輸入業者에게 支給된다. 그러나 GATT의 규정은 이러한 補助金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欠損補填金은 共同体内의 肉類加工業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돼지고기 公式価格 1977/78

	u.a / t *
基 本 価 格	1,202 £ 70.51 / 100 kg

* 1 파운드 = 1.70463 u.a

달걀 및 家禽肉

共同体 6 個國間의 穀物価格을 調整함으로서 1967年 7月부터 共同体内의 제란 및 家禽肉의 共同調整의 실시가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輸入品에 대해서는 돼지고기와 비슷한 가격통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域內価格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共同体에 들어오는 달걀 및 家禽類 輸入品은 水門価格이나 그 이상으로 들어와야 한다. 만일 輸入品이 水門価格 以下로 들어올 경우에는 原產地에 따라 다른 充當賦課金을 물어야 한다. 돼지고기의 경우에서 처럼 水門価格은 國際市場의 실제 生産費用을 감안하여 책정된다.

分期마다 정해지는 水門価格 外에도 輸入品에 대해서는 共同体内 生産者에게 特惠를 주기 위해 水門価格의 7%를 별도로 부과한다 든가,共同体內 生산자가 飼料用으로 더 비싼 穀物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부과금을 물리는등 여러가지 징수금이 붙게 된다. 이 賦課金을 정하는데 있어서 委員團은 該當管理委員會와 정규적인 협의를 한다. 輸入業者가 국제시장에서 競争할 수 있도록 欠損補填金이 지급될 수도 있다.

제 란 生 產

(単位 : 千 t, 1975)

西	独	893	벨지움 / 륩셈부르그	221
프	랑	768	英 國	825
이	텔	619	아 일 랜 드	41
네	펜	313	페 마 크	75
9 個國合計			3,755	

共同体內의 점포에서 팔리는 모든 달걀은 크기와 内容物의 品位를 규정한 嚴格한 等級基準에 따르게 된다.

이 基準은 域內生產品은勿論 輸入品에도 적용된다.

油脂 및 種實油

올리브기름을 제외하고 9個國이 생산하는 植物性 食用油는 共同体 수요량의 10% 미만이다. 올리브기름은 프랑스와 이탈리에서 共同体需要量의 70 ~ 80%를 생산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油脂, 버터 및 그 加加工品과 食用油사이에는 密接한 상업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 部門을 다루는 共同組織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規制의 주요 대상品目은 油菜, 무우油菜, 해바라기씨, 大豆등이다. 이 品目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指導價格과 介入價格이 정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共同体内 여러 지역의 介入價格이 결정된다. 生產者들은 또 欠損補助金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共同体內의 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食用油의 輸入은 몇몇 경우에는 關稅를 물어야 하지만, 다른 統制는 받지 않는다. 이 관세는 GATT에 둑여져 있다. 油菜역시 GATT에 둑여 있는데 無關稅로 수입된다. 따라서 域內 生産품과 輸入品은 사실상 自由競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欠損補助金의 교부가 필요한 것이다. 輸出業者에게는 국제시장과의 가격격차를 메우기 위해 輸出補助金을 지급할 수도 있다.

올리브기름의 輸入에는 門戶價格과 輸入價格(c.i.f基準) 사이의 차이를 补填하기 위한 여러가지 부과금이 물려진다. 域內供給品이 輸入品과 치열한 競爭을 해야 하기 때문에 欠損補助金을 정기적으로 生產者들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所得을 生產者指導價格까지 높

여주고 있다. 각 生產國의 介入當局은 共同体가 정한 市場指導價格을 유지하기 위해서 公定介入價格으로 收買를 한다.

과일과 野菜

과일과 野菜市場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部門의 경우보다도 生產者組織에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 계절별로 변화가 많고 저장이 힘들며, 流通上의 문제가 國家的 차원이 아닌 地方的이나 地域의인 까닭에 고정된 支持制度를 사용하는데는 難点이 많기 때문이다.

輸入品은 그 價格이 連2日間 參考價格 밑으로 떨어질 경우 対應하는 關稅가 부과됨으로서 조절된다. 이 參考價格은 사실상 生產과 유통비용을 기초로 한 최저 輸入價格이다. 이 價格은 계절별로 引上될 수 있으며, 여기에 關稅가 붙는다. 關稅率은 채소의 경우 10 ~ 21%, 과일의 경우 7 ~ 25%이다.

內需市場管理를 위해서 꽃양배추, 도마도, 食卓用포도, 복숭아, 사과 배에는 基本價格이 매년 關僚協議會에 의해 결정된다. 會員國들은 基本價格의 40 ~ 70%線에서 收買價格을 정할 수 있다. 市場價格이 連3日동안 이 收買價格 아래로 내려가면 重大危機事態가 선포되고, 會員國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介入해야 한다.

生產者組織은 備蓄量을 정하거나 각 상품마다 下落價格(fall-back price)을 정하는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만일 價格이 下落價格까지 떨어지게 되면 生產者組織은 共同体의 基金으로부터 支援을 받아 介入할 수도 있다.

과일과 채소에는 級格한 等級基準이 적용되며, 介入의 경우에는 II 級價格이 지불된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최고품질의 生산품을 市場

을 통해 처리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生産者組織의 能率을 증진시키기 위해 共同体는 会員들에게 訓練을 실시하고, 운영을 돋기 위해 무상지원을 베풀고 있다.

호 프

호프에 대한 市場規制는 각료협의회가 가장 최근에 합의한 안건 중의 하나이다. 輸入호프에 대해서는 G A T T에 정해진대로 9%의 関稅率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賦課金이나 交付金은 計劃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프랑스와 벨지움이 시행해 왔던 輸入品에 대한 코타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能率的인 生產者組織을 결성하기 위한 特別支援金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기구는 호프의 生產을 市場의 需要에 맞게 조절하는데 主導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委員團이 내놓은 年次報告書와 제안을 바탕으로 閣僚協議會는 生產者들에게 補助金을 주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생산자들이 종자를 더 좋은 品種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해 補助金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支援金의 절반은 農業基金이 담당한다.

共同体內 호프의 총재배면적은 27,500 ha으로, 이중 3분의 2는 西独이 차지하고 있다.

감자, 羊고기, 새끼羊고기, 羊毛

共同体 農產品의 96%가 共同農業政策의 規制를 받지만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品目이 있다. 그것은 감자, 羊고기, 새끼羊고

기, 羊毛이다. 이 品目들은 EEC 農業政策에 포함되지 않는 農產品으로 各 會員國政府는 市場管理를 위해 独自的인 政策을 適用할 수 있다.

감자 生産量

(単位 : 千t, 1975)

西		獨	10,853
프	蘭	斯	7,210
이	捲	拉	2,943
베	爾	士	5,003
벨	支	烏	1,272
룩	申	卑	28
英		國	4,516
아	일	德	978
덴	馬	克	675
9	個	國	33,478
	個	合	
		計	

羊고기와 새끼羊고기의 경우 関稅率은 20%이며, 生羊은 15%이다.

羊毛는 EEC에서는 工產品으로 취급된다. 會員國들이 流通機構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共同體로서는 아무런 支援体制가 없다. EEC로 들어오는 羊毛에 대해서는 関稅가 없다.

協議會는 현재 감자, 羊고기, 새끼羊고기를 共同農業政策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 배

담배는 1970年 2月 共同農業政策案에 포함되었다. 共同体가 介入措置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共同流通制度도 마련되었다. 담배가 국가 專売事業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는 새 제도에適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煙草物品税는 9개국 전역에서 조정될 것이며, 1980年까지 完結될 예정이다.

포 도 주

포도주는 共同政策을 適用하기가 가장 困難한 品目임을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문제는 오랜 토의의 対象이 되어 왔으며, 7年동안 提案과 代案이 번갈아 나왔다. 그러나 1970年 4月 마침내 合意에 도달했다. 共同体가 결정적으로 財政支援制度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일괄조치의 한 부분으로서 採択되었던 것이다.

이 최종적인 調整은 輸入品에 대한 모든 코타를 철폐하고, 關稅制度와 輸入포도주값을 共同体内의 것과 동일한 값으로 끌어 올리는 여러가지 賦課金制度를 導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植栽에 대한 감독, 介入措置, 第3國과의 무역에 있어서 共同條件등 여러가지 조치도 마련되었다.

보통 食卓用 포도주는 알콜함유량이 8.5 ~ 15%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高級포도주와 飯酒用포도주는 다른 基準을 적용) 르셉부르그와 西獨의 포도주 재배자는 日當不足을 補完키 위해 설탕을 添加함으로서 알콜함유량을 3.1%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간에 소위 “포도주 戰爭”이 1976年 봄 해결을 보

았을 때 포도주의品質을 개선하고 일부 포도원의 生산을 중단하는 조치가 合意되었다.

水產集

EEC 生鮮市場組織의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

- 共同体 전역의 生鮮自由市場
- 輸入規制를 위한 參考價格制度
- 生產者組織의 책임 하에 둔 市場組織과 介入
- 農業基金에 의한 近代化를 위한 支援

가격조정은 生鮮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 3年間의 代表市場價格을 根拠로 生鮮에 대한 指導價格이 정해진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介入線이 결정된다. 생선가격이 이 介入線 수준으로 떨어지면 生產者組織은 市場에서 生鮮을 철수시키고 指導價格의 60 ~ 90%를 받게 된다. 철수비용은 주로 EEC基金에서 충당한다.

EC 會員國들은 條約 (The Treaty of Accession)에 따라 1982年까지 自國海岸의 6 마일 沿海內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水域에서 漁撈를 해왔던 이웃 항구로부터 온 漁船의 漁撈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었다. 새로 EC에 가입한 나라들과 프랑스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6 마일이상 12 마일까지 이 조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國際專管漁撈水域을 200 마일까지 拡張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共同体도 漁業政策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委員團은 현지 漁民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12 마일 제한을 실시하고, 9개국의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共同体가 漁獲量코타를 배정한다는 案을 내놓고 있다.

VI. EC共同体와 세계經濟

EC共同体 및 세계의 貿易量

	1968	1973	1975
世界의 輸出量(单位: 億 달러)			
全生産品	201	468	720
- 그중農產品	45	99	126
EEC의 輸入과 輸出			
全生産品輸入	46	104	155
- 그중農產品	15	30	32
全生産品輸出	44	100	143
- 그중農產品	4	9	12

* EEC 국가간의 무역은 제외

世界最大의 食糧輸入者

EC는 世界最大의 農產品 輸入者인 동시에 또 世界最大의 食糧輸出者이기도 하다. 1973年 9個國은 제3세계로부터 300億 달러어치의 食品을 사들였는데 이는 제3세계 總輸出額의 29%에 달하는 액수이다.

輸出은 94億 달러에 달했고, 이는 總輸出의 9%에 해당한다.

1958 ~ 1970年 사이에 農產物 輸入은 價值上으로 86%가增加했고, 輸出은 사실상 倍加했다.

EC와 美國은 특히 両者の 農業支持制度의 운영 방식을 놓고 가

그리고 利益의 총돌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위의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럽統一, 구체적으로는 共同農業政策이 農產品의 세계무역에 대해 얼마나 큰 影響을 미쳐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共同体의 창설이래 共同体와 非會員國과의 무역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EEC 회원국간의 무역은 이보다도 더增加했다. 1958年 會員國들은 다른 會員國으로부터 9億달러치의 食糧, 음료, 담배를 輸入했다. 1970年 그 액수는 54億달러로 늘어났다.

國際貿易協定

農產品 무역을 포함한 모든 국제무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共同体는 국제무역협상에서 강력한 政策과 일관성있는 주장을 꼭야만 했다. 共同体가 로마條約에 의해 부여된 임무, 즉 세계무역의 調和된 發展에 기여한다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이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무역문제에 있어서 共同体를 대표하는 일은 보통 委員團에게 맡겨진다. 委員團은 閩僚協議會로부터 훈령을 받게된다.

협상에서 共同体의 힘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関稅와 무역에 関한 一般協定(GATT)의 딜런 라운드와 케네디 라운드에서 였다. 딜런 라운드(Dillon round)에서 共同体는 共同市場창설에 뒤이어 있었던 関稅率의 引下에 추가해서 또 한차례 農產品輸入에 대한 関稅率을 引下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여러가지 賦課金制度의 導入에 의해 주요농산물 供給國들의 輸出이 影響을 받을 경우 이를 供給國들과 협상을 하기로 했다.

EC는 美國과 옥수수, 수수, 軟麥, 쌀, 家禽에 대해 이 協定들을 체결했고, 카나다와는 듀럼 小麥과 軟麥에 대해서 체결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持續되었던 GATT의 캐네디 라운드는工產品의 關稅率을 引下시켰다. 그러나 農產物 무역을 規制하려는共同体의 企図는 穀物(小麦貿易協約) 및 食糧援助(食糧援助協約)에 관한 국제협정을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食糧援助協約은 調印國들이 450萬t의 穀物을 開發途上國에 제공한다는 것이 骨子이며,共同体는 이중 23%를 자체부담으로 마련키로 되어있다.

캐네디라운드가 終了된 후 農產品에 대한 世界貿易의 분위기는 改善되지 않았다. 잉여농산물 특히 小麥과 乳製品 問題는 1960年대 동안 점점 더 惡化 되었다. 北美地域의 小麥輸出은 1965/66년도에서 1969/70년도 사이에 거의 倍로 늘어 5千1百50萬t이 되었고, 오스트렐리아의 輸出은 60萬t에서 8百萬t으로 늘어났다.共同体의 輸出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域內의 生产量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들의 시장규모를 축소시킴으로서 국제 穀物貿易에 影響을 끼쳤다. 1969年 小麥貿易協約의 가격조건들은 붕괴되었고, 1971年 이 協約을 再協商할 때 폐기처분 되었다.

E C 6個國을 비롯한 전세계의 酪農製品의 세계무역에도 危機가 발생했다. 1969년까지共同体의 농민들은 內需量보다 5%가 많은 우유를 생산했다.共同体는 한동안 酪農製品에 대한 국제협정을 맺으려 조바심을 했다. 그 결과 1970년 脫脂粉乳에 대한 GATT의 調整이 이뤄져 한결 익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脫脂粉乳의 最低輸出價格를 정하고 있다.

乳製品에 대한 보다 광범한 國際協定을 이루하는 것은 지금도共同体의 急先務로 되어 있다.

國際貿易을 緩和하기 위한 조치로共同体와 美國은 1971年 6月

農產品의 交易조건을 일부 緩和하기로 合意했다。 뒤이어 1972年 2月4日 短期的인 調整에 合意했다。 共同体와 美國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로서 互惠와 相互利益의 원칙을 수락했다。

새로운 一聯의 GATT協商이 現在進行中이며, 委員團이 共同体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협상은 1973年가을 東京에서 시작되었는데, 무역장벽을 철거하고 세계 經濟關係構造를 改善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석했다。 이 협상의 目的中의 하나는 非關稅 장벽(non-tariff barriers)을 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農產品貿易에 대한 國際協約을 맺는데 있다。

美國產 감귤류 및 담배 輸入品에 대한 EEC의 關稅率 引下를 포함한 협정이 GATT후원하에 1974年5月 체결되었다。 이 技術的인 협정은 共同体의 확장으로 인한 일부 제3세계가 입는 무역상의 손실을 보상토록 되어 있다。

한편 會員國들의 무역정책을 調和시키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東歐와의 무역에서 일관성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한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支援

세계의 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처지를改善하기 위한 조치는 EC政策에 있어서 중심적인 問題로 되어있다。 1973年과 74年 갑자기 폭등한 에너지, 食糧 및 비료가격은 특히 많은 開發途上國의 상태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共同体는 이들 開發國들이 폭등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食糧援助에 나섰고, 국세기금에 현금을 했다。

아프리카, 카리브海 諸國들, 태평양의 여러나라등 52個 開發途上國

과 맷은 로메協約은 이들 여러나라들의 거의 모든 農產品이 関稅 없이 共同体로 들어올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原料에 대해 収入安定策을 실시하여 生產國이 국제시장가격의 침체에도 収入이 줄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地中海, 印度亞大陸, 南美의 여러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많은 國家들도 共同体와 특별한 貿易關係를 가지고 있다。

共同体는 現在 國際自由市場에서의 설탕가격에 대해 기틀을 마련할 國際설탕協定에 참가하려 하고 있다。이 새協定을 1978년 1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食糧消費(植物性)

1974/75, kg/1人

國名	穀物總量	쌀	감자	설탕	野菜	포도주
西獨	66	2	92	36	66	23
프랑스	72	4	94	38	113	103
이탈리	125	6	37	28	155	103
네델란드	64	4	88	43	90	10
벨지움	79	3	107	35	101	55
룩셈부르크						
英國	73	2	99	46	74	6
아일랜드	84	1	127	47	74	2
덴마크	65	2	65	48	48	11
9個國	82	3	82	38	99	51

食糧消費(動物性)

1975, kg / 1人

國名	肉類	계란	油脂 및 식용유	버터	生乳
西独	90	17	19	6	66
프랑스	99	13	19	8	67
이탈리	65	11	21	2	72
네덜란드	72	11	31	2	94
벨지움	90	11	26	9	74
룩셈부르크					
英國	73	14	15	7	142
아일랜드	101	13	10	10	207
덴마크	70	11	25	7	120
9個國合計	82	14	19	6	89

附 錄

共同農業政策에서 사용되는述語의語義解說

共同市場의 公式價格体系는 매년 委員團의 案을 바탕으로 關僚協議会가 정한다. 그 대상에는 羊고기, 새끼羊고기, 감자, 羊毛를 제외한 모든 주요 農產品이 포함된다.

基本價格 (basic price, prix de base) : 이것은 돼지고기, 과일, 채소에 적용된다. 市場價格이 일단 基本價格 아래로 떨어지면 잉여生產品을 収買함으로써 市場價格을 支持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報償金 (Compensatory amount) : 이것은 共同體 域內貿易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価格差異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EC의 원래 가맹국인 6個國과 새로 가입한 3개국간의 무역 및 신규가입 3개국간의 相互貿易에 있어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過渡的 報償金 제도가 적용되었다. 가격이 높은 會員國에서 가격이 낮은 會員國으로 商品去來가 일어날 때는 缺損補填金 (restitution)이 支給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賦課金 (levy)이 징수된다. 이런 조치들은 1978년 1월에 終了되도록 되어 있다. 비슷한 調整 조치가 通貨報償金이라 명목으로 通貨變動을 감안하여 취해지고 있다.

關稅 (Customs duties) : 이것은 賦課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輸入農產物의 경우 共同體 域外에서 도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고정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生牛에는 16%, 쇠고기

과 송아지고기에는 20%, 生羊고기에는 15%, 양고기 (mutton) 와 새끼양고기 (lamb) 은 20%의 관세가 물려진다. 파일과 채소에는 여러 가지率이 적용된다. 関稅는 閣僚協議會에 의해 引下되거나 철폐될 수 있다.

形質변경 (denaturing, dénaturation) : 補助金이 2重으로 支給되는 것을 막기 위해 粉乳와 같은 商品에 着色을 하던가 다른 成分을 添加하는 것을 가르킨다.

輸出欠損報壞金 (export refunds, restitutions) : 共同体의 輸出業者가 국제시장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共同体内의 높은 가격과 낮은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메꿔주는 缺損補壞金 또는 還払金을 支給한다.

指導價格 (guide price, prix d'intervention) : 이것은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에 적용되며, 輸入統制와 支持收買의 방아쇠로서 역할을 하고, 동시에 目標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介入價格 (Intervention price, prix d'intervention) : 이것은 회원국의 價格介入機関이 농산물을 取買할 때 치둬야 할 가격이다. 小麥, 大麥, 옥수수, 燕麥의 경우 介入價格은 目標價格보다 12 ~ 20% 낮게 정해진다. 穀物別 介入價格은 지역별로 다르지는 않다. 쇠고기의 경우 介入價格은 指導價格보다 10% 낮게 정해지고, 돼지고기의 경우는 基本價格의 85 ~ 92%로 책정된다.

賦課金 (levy, prélevement) : 穀物의 경우 共同体 域外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賦課金은 매일 로테르담의 최저 오퍼가격에 따

라 책정된다. 돼지고기와 같은 畜產品에 대해서는 賦課金이 年 4 回 결정되며, 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穀物價格에 있어서 국제시세와 共同體內의 生産비용과의 차이를 補填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共同市場의 生產者들에게 追加로 特惠를 주는 것이다. 賦課金은 또 국제가격이 높을 때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수되기도 한다.

参考價格 (reference price, prix de reference) : 水門價格 (sluicegate price) 과 비슷한 제도이지만 輸入과일과 채소에 적용된다. 또 家畜의 加重值가 붙은 共同體평균가격을 가르킬 때도 쓰인다.

水門價格 (Sluicegate price, prix decluse) : 이것은 돼지고기, 달걀, 家禽에 대해서는 固定되어 있으며, 非會員國의 生產費를 반영도록 算定된다. 이 가격보다 높은 輸入品에는 賦課金을 환불해 주고, 水門價格보다 낮은價格의 輸入品에는 補填賦課金이 물려진다.

目標價格 (target price, prix indicatif) : 共同體의 政策은 輸出品의 가격을 가능한한 目標價格에 가깝도록 유지시키는데 있다. 穀物의 경우 이 가격은 年中の 창고비용을 감안해주기 위해 계절별로 引上된다.

門戶價格 (threshold price, prix de seuil) : 이것은 非會員國으로부터의 穀物, 乳製品, 설탕이 共同體內 항구에 인도될 수 있는 최저 輸入價格이다. 일단 항구로 부터의 運賃이 加算되면 輸入品은 目標價格과 같거나 비싼값으로流通되어야만 한다. 문턱가격보다 낮게 EEC에 船積된 商品은 그 가격을 문턱水準으로 끌

어 울리기 위해 賦課金이 징수된다.

計算單位(unit of account) : 共同体豫算에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쓰이는 連貨单位이다. 35 計算单位(u.a.)는 純金 1 온스와 等価이다. 農產品價格을 계산하기 위해서 英國의 換率은 (綠色파운드貨) 현재파운드당 1.70463 u.a.로 정해져 있다. 아일랜드의 率은 파운드당 1.35190 u.a.이다.